

제12조 【계약기간】

1.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
2. 등급 변경, 수가 변경, 월한도액 변경, 본인부담금 자격변동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3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제13조 【계약목적】

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- 1)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(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)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 - 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 - 3) 명확한 해당제도·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
2. 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
※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※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 【월 이용료】

1.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2.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%,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%, 6%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.
3.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.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“행복한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”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(청구 후 30일 이내)
5. 본인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,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/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.
6.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

<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이용료 및 본인 부담 관련 사항 안내 >

○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단위(원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

구 분	장기요양				
	분류	금액	15%	9%	6%
가-1	30분 이상	16,940원	2,541원	1,525원	1,016원
가-2	60분 이상	24,580원	3,687원	2,212원	1,475원
가-3	90분 이상	33,120원	4,968원	2,981원	1,987원
가-4	120분 이상	42,160원	6,324원	3,794원	2,530원
가-5	150분 이상	49,160원	7,374원	4,424원	2,950원
가-6	180분 이상	55,350원	8,303원	4,982원	3,321원
가-7	210분 이상	61,670원	9,251원	5,550원	3,700원
가-8	240분 이상	68,030원	10,205원	6,123원	4,082원

등급	금액
1등급	2,306,400
2등급	2,083,400
3등급	1,485,700
4등급	1,370,600
5등급	1,177,000

심야가산	22시 이후 익 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를 가산한다. 다만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휴일가산	"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"에 의한 공휴일(일요일)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를 가산한다.
유급휴일	"유급휴일" 및 "근로자의 날"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%를 가산한다.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타 의료수급권자,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, 저소득층(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	9% / 6%
기초수급권자	0%

※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
※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(이하 "유급휴일"이라 한다)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(이하 "근로자의 날"이라 한다)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%를 가산한다.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.

※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,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. (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)